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제44호 2023. 9. 15(금)

|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
| <b>선<br/>람</b> | 기관의 장 |
|                |       |

## 규 칙

- 남원시 규칙 제734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1

## 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3-1847호 공시송달공고-----4
- 남원시 공고 제2023-1852호 도로지정변경공고-----5

## 예 규

- 남원시 예규 제37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-----8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「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3년 9월 15일

남원시 규칙 제 734 호

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
일부개정규칙

별표 1,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(제4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| 신 청 자 격 조 건   |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1. 건설업의 종류     |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·하수도설비 공사업  |            |         |
| 2. 시공기술자       |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토목,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및 이에 준하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, 『수도법』 제25조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자격증 보유자(필수) |            |         |
| 3. 자본금         | 150,000,000원 이상   |            |         |
| 4. 영업시설        | 사무실 20㎡ 이상 [남원시 소재로 등록된 사무실]  |            |         |
| 5. 공사용 장비 및 공구 | 명 칭   | 규격         | 수량      |
|                | 유압브레이크  | 20kg 이상    | 1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터  | 50mm 이상    | 총 2대 이상 |
|                | 포장절단기   | 120mm 이상   | 1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램머  | 50kg 이상    | 2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콤팩타   | 50kg 이상    | 2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핸드절단기   | 120mm 이상   | 2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핸드롤러  | 650kg 이상   | 1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발전기   | 5kw 이상     | 1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굴삭기   | 1.5톤 이상    | 1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새들천공기   | 13 ~ 50 mm | 2대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덤프트럭  | 1톤 이상      | 1대 이상   |

[별표 2]

##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(제4조제2항)

| 항 목           | 기 준   | 배점  | 평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총 계           |   | 100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. 시공 능력      | 합 계   |   | 40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공사 실적   | 소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(급수공사 대행 포함) 공사실적(대한전문건설협회, 남원시 발급)  | 5억 이상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3억 이상~5억 미만                | 18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1억 이상~3억 미만                | 16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1억 미만                      | 14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운영 실적   | 소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건수 (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 분야 실적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건 이상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35건 이상~50건 미만              | 15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20건 이상~35건 미만              | 10           |
| 20건미만         |   |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2. 기술 능력      | 합 계   |   | 25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인력  | 소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시공기술자 보유(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)   | 기준보유(1명)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(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) | 1인당 2점(최대4점) |
|               | 경력  | 소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시공기술자의 경력(합산)<br>(기술인협회 발급)   | 15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10년 이상~15년 미만              | 12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5년 이상 ~10년 미만              | 10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5년 미만   |   | 7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3. 급수공사 대행 수행실적   | 합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|
| 수행 기간(남원시 발급) |   | 9년 이상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6년 이상 ~9년 미만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3년 이상 ~6년 미만  | 2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3년 미만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4. 행계 및 방법    | 합 계   |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수행 계획   | 1) 공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<br>2) 공사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<br>3)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<br>4) 문제점 분석 및 대책<br>5) 만원대응 방안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수행 방법   | 1) 작업수행기법(사전조사 및 작업(시공)방법 등)<br>2) 수행공사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과업 적용성<br>3)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5    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5. 장비 및 공구    | 합 계   |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별표 1의 “공사용 장비 및 공구 보유”  |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6. 행정 처분 감점   | 1) 최근 3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제재처분 (협회 발행)<br>2) 급수공사 대행업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 (남원시 발급) | 과징금 처분(-5점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| 영업정지처분(-10점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비고

1. 상대 평가 시의 등급별 배분 및 점수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에 의한다.
2.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으로 한다.

남원시 공고 제2023 - 1847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주소지로 송달(등기)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, 처분 기한 내 납부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15일

## 남원시장

- 제 목 :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
- 공고기간 : 2023. 9. 15. ~ 2023. 9. 30.(15일간)
- 공고대상

| 이름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| 위반내용        | 법적근거                | 처분내용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장*식<br>전북 남원시 죽향동 171-* |     | 도로내<br>무단적차 | 도로법 제61조 및<br>제117조 | 과태료<br>50만원 | 주소지 |

## 4. 공시송달내용

- 가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%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의 증가산금을 60개월 까지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또한, 아래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남원시장(처분청) 또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를 통해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처 : 전라북도 남원시 건설과(전화 : 063-620-6530, 팩스 : 063-620-6709)

◎ 남원시 공고 제2023-1852호

## 도로지정변경공고

건축법 제11조 관련 건축허가 신청 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(변경)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9월 11일

### 남원시장

1. 공 고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(변경)
2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
3. 공고기간 : 2023. 09. 12. ~ 2023. 09. 26. (14일간)
4. 공고대상 도로 개요

| 지정번호            | 대 위치                   | 건축주성명 | 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    | 도로길이(m) | 도로너비(m) | 도로면적(m <sup>2</sup> ) | 이해관계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지번            | 편입면적(m <sup>2</sup> ) | 토지소유자      |
| 2021-47<br>(기존) | 남원시 고죽동 산51-9(임) 외 4필지 | 장*주   | 2021-건축과-신축허가-83 | 110     | 6       | 801                   | 고죽동 산51-26(임) | 18                    | 정*용<br>장*주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죽동 산52(임)    | 552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죽동 산53-1(임)  | 233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021-47<br>(변경) | 남원시 고죽동 산51-9(임) 외 3필지 | 김*상   | 2021-건축과-신축허가-83 | 100     | 6       | 680                   | 고죽동 산52(임)    | 499                   | 김*상<br>조*규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죽동 산53-1(임)  | 181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5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남원시청 건축과 비치(열람가능)
7. 도로지정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남원시청 건축과로 문의 (☎063-620-6582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(2면 중 제2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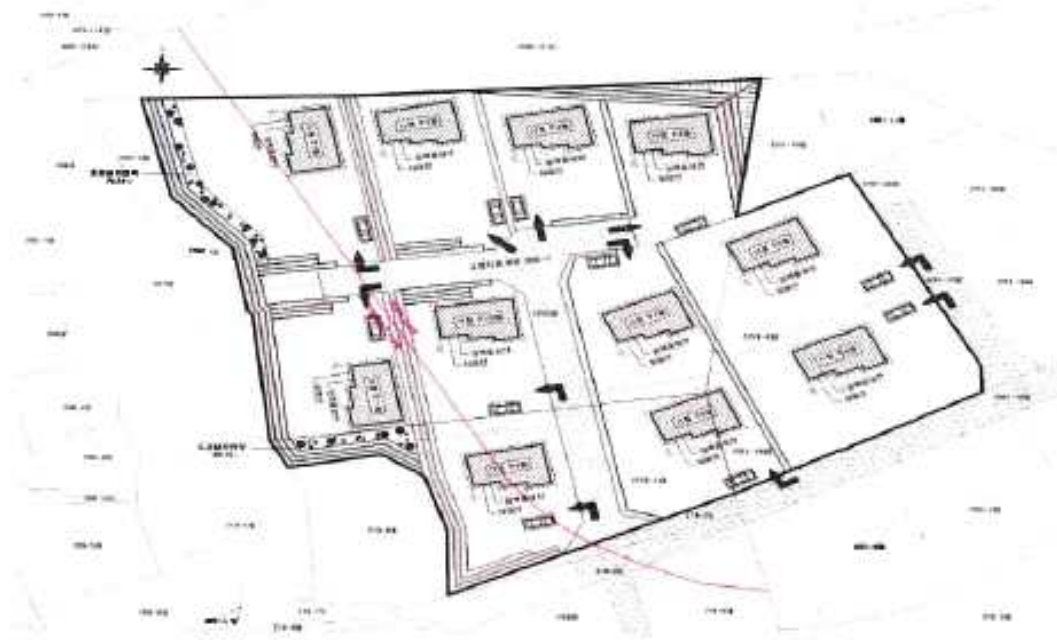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

축척 [ ] 1/600, [ ] 1/1,200



남원시 예규 제 37 호

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## 허가·신고 우선순위 평가 항목 및 기준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| 배점   | 평가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계                    | 100점 |  |
| 생 계 관 련              | 30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: 30점</li> <li>○ 차상위 계층(생계 곤란자) : 25점</li> <li>○ 비 수급권자 : 15점</li> </ul>  |
| 부 양 가 족              | 25점  | (만18세 미만, 60세 이상 직계 존·비속으로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인 이상 : 25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4인 : 22점</li> <li>○ 3인 : 19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2인 : 16점</li> <li>○ 1인 : 13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없음 : 10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
| 장 애 인<br>(조업가능자에 한함) | 15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점</li> <li>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점</li> <li>○ 비장애인 : 5점</li> </ul>  |
| 남원시 거주기간             | 20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년 이상 : 20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9년 : 18점</li> <li>○ 8년 : 16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7년 : 14점</li> <li>○ 6년 : 12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5년 : 10점</li> <li>○ 4년 : 8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3년 : 6점</li> </ul> |
| 신청자 연령               | 10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0세 이하 : 10점</li> <li>○ 31~40세 이하 : 8점</li> <li>○ 41~50세 이하 : 6점</li> <li>○ 51~60세 이하 : 4점</li> <li>○ 61~74세 이하 : 2점</li> </ul>   |

※ 가점사항

- 남원시 내수면 어업계 회원 : 5점(투망어업)

▷ 신청한 어업 종류와 현재 가지고 있는 어업 종류가 동일하여야 인정

※ 동점자 우선순위

1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
2. 차상위 계층(생계 곤란자)
3. 부양가족 수(18세 미만, 60세 이상 직계 존·비속)